

오산시토지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

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30호
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
(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예따른
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)

제1조(목적)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,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감정 사정되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관계기관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개인의 토지가 부당하게 감정 사정될 경우 심의 의결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가능한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,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(구성원의 30% 이상)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2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
2.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법관, 변호사, 공증인 또는 감정 평가사
4. 관계 공무원 등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제6조(의사)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

오산시토지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

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보상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상업무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98. 11. 18>

제8조(회의록비치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)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1. 18 훈령 제129호>

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